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프로에 입성하지 못한 선수들이 야구를 포기하지 않고 독립야구를 통해 프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리그를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¹⁾, 제32조(세금계산서 등)²⁾,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³⁾ 등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⑧ “생략”

3) 「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생략”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물품·용역이 필요할 시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행위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및 경기도체육회를 통해 연도별로 정산검사를 받았고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계약분야에 대한 개선이 다소 부진하게 이루어졌다.

가. 2021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보조금 운영

협회는 2021년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운영하면서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사업지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집행하였고, 다수의 물품 구매를 진행하면서 분할구매 및 계약서 미작성과 같이 보조금 집행에 부적절한 사항이 [표1]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1] 2021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용품 등 물품구매 현황

구 분	업 체	금액(원)	지적사항
유니폼	*****	*,***,000	분할구매 및 계약서 미작성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구 분	업 체	금액(원)	지적사항
장 비	*****	***,000	분할구매 및 계약서 미작성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야구공	***** *	*,***,000	분할구매 및 계약서 미작성
		*,***,000	
		*,***,000	
		*****,000	
		*,***,000	
		*,***,000	
		** ,***,000	
		*,***,000	
*,***,000			
배 트	***** **	***,000	분할구매 및 계약서 미작성
유니폼	***** ***	*,***,000	분할구매 및 계약서 미작성
		***,000	
		***,000	
		***,000	
		***,000	
		***,000	
		***,000	
심판용품 등	***** *****	*,***,000	분할구매 및 계약서 미작성
*,***,000			
물, 음료	***** *****	***,000	분할구매 및 계약서 미작성
		***,000	
		***,000	
		***,000	
		***,000	
		*,***,000	
야구용품	***** *****	*,***,000	분할구매 및 계약서 미작성
		*,***,000	

나. 2022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보조금 운영 및 지적사항 미개선

협회는 2022년도에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운영하였는데, 2023. 3월 道에서 실시한 「2022회계연도 보조금 정산검사」시 2021년도와 동일한 사안(유니폼 등 물품 및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관련 법령 미준수)에 대하여 재차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다.

[표2] 2022 경기도독립야구리그 분할계약 및 물품구입 현황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원)	업체명	지적사항
1	2022 경기도독립야구리그	유니폼 등 14건	**,***,000	****	분할계약 등 회계처리 부적정
2	2022 경기도독립야구리그	야구공 등 8건	**,***,000	**** *	분할계약 등 회계처리 부적정
3	2022 경기도독립야구리그	영상중계 1건	**,***,000	**** **	분할계약 등 회계처리 부적정
4	2022 경기도독립야구리그	영상제작 1건	*,***,000	**** ***	분할계약 등 회계처리 부적정

이는 2천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분할하여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입찰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협회는 임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표3]과 같이 총 13건 6천 5백여만원의 물품 구매 및 용역계약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경기도체육회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어야 하나, 해당 조항이 준수되지 않은채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졌다. ※ 道 「2022 회계연도 보조금 사업비 정산검사」시 지적사항

[표3] 2022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임원업체 계약 현황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원)	업체명	지적사항
1	2022 경기도독립야구리그	개막행사 등 7건	**,***,000	S*****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소지
2	2022 경기도독립야구리그	트라이아웃 행사 등 6건	**,***,000	디*****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소지

다. 2023년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보조금 운영 및 증빙자료 미보완 협회는 `23년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유니폼 등 리그운영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면서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4]와 같이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였다.

[표4] 2023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분할계약 현황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원)	업체명	지적사항
1	2023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유니폼 등 12건	** ,*** ,000	위*****	분할계약 등 회계처리 부적정
2	2023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야구공 등 6건	** ,*** ,000	엔*****	분할계약 등 회계처리 부적정

[관계기관의 의견]

협회는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사업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보조금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에 맞춰 계약을 수행하고 있다.” 라고 답하였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은

2024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운영하면서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제규정 등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이 집행하고 관리 될 수 있도록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및 경기도체육회에서 지적된 지적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하여 본회 해당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고 결과를 공정감사실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국도비를 비롯한 모든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의사결정을 시작으로 원인행위를 결정하고 지출 할 때 적법한 절차와 증빙을 근거로 회계를 처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제4조(일반 원칙), 제42조(지출원인 행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⁴⁾, 제32조(세금계산서 등)⁵⁾,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⁶⁾ 등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4)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⑧ “생략”

6) 「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생략”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물품·용역이 필요할 시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행위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규정, 지침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나 [표1]과 같이 회계처리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1] 분할구매 등 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 현황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원)	업체명	지적사항
1	2023 ****	트로피	*,***,000	한****	분할구매
2	2023 ****	메달	***,000	피****	분할구매
3	2023 **** *	트로피	*,***,000	한****	분할구매
4	2023 **** *	메달	***,000	피****	분할구매
5	**** **	트로피	*,***,000	한****	분할구매
6	**** **	트로피	*,***,000	한****	분할구매
7	**** **	메달	*,***,000	피****	분할구매
8	**** ***	트로피	*,***,000	한****	분할구매
9	**** ***	메달	***,000	피****	분할구매
10	**** ***	야구공	***,000	ㅣ****	분할구매
11	**** ***	야구배트	*,***,000	야****	분할구매
12	**** ***	맨투맨 등	*,***,000	러****	분할구매
13	**** ****	경식용품	*,***,000	위****	분할구매, 계약서 미작성
14	**** ****	연식용품	*,***,000	엠****	분할구매

[조 치 사 항]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은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제규정 등 지침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협회 회계규정을 제정하여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조치결과를 본회 공정감사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규약 및 규정 개정 절차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가.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을 개정하기 위하여 20**.**.*. ‘20**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규약」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이후 20**.**.*.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해당 「규약」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였다.

또한, 협회는 2023년도 추가적인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2021년도와 같은 절차를 거쳐(20**.**.*. 정기이사회 심의·의결, 20**.**.*. 정기총회 심의·의결) 「규약」을 변경하였다. 동 변경절차 진행시에는 2021년도와는 달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이는 2021년 「규약」 변경시 관련 사항으로 협회의 「규약」 변경시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변경내용의 적용으로 보인다.

나. 협회는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운영하기 위하여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운영위원회」(이하 “경기도리그 운영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고 있으며, 해당 리그 및 경기도리그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20**.**.*.자로 제정하였고, 현재까지 두차례(20**.**.*. / 20**.**.*.)개정한 바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現 협회 「규약」 제52조제1항에서는 「규약」변경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규약」 변경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년 협회 「규약」 개정 당시(개정前) 내용 변경 관련 조항은 개정 후의 절차와 달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총회의 의결과 본회의 규정 개정 승인은 동일하며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동 절차는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협회 「규약」외 협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타 규정의 경우 그 절차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규약」 제53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제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변경 전 「규약」 또한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였을 때, 협회 기본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고, 기타 제규정의 경우에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내용을 변경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협회의 「규정」 및 기타 제규정을 변경하면서 관련 조항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과 본회의 승인을 득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 변경하였어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가. 협회 「규약」 개정절차 부적정

협회는 「규약」을 변경하기 위하여 2021.2.1. ‘2021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규약」 개정(안)을 부의안건으로 정하여 심의·의결하였고,

관련 절차에 따라 20**.**.**. ‘2021 정기대의원총회’에 협회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진행하였다.

또한, 2023년도 「규약」 개정시에는 2021년도 변경한 「규약」 내용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였고, 20**.**.**. ‘2023년 정기 이사회’ 및 20**.**.**. ‘2023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득하여 협회 「규약」을 개정, 이를 시행하였다.

당시 협회 「규약」 제52조에 따르면 협회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협회는 총회에서 심의·의결 후 본회의 규정개정 승인여부에 따라 개정 절차를 완료 및 시행하였어야 하나, 「규약」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규약」 내용 변경에 관한 절차는 변경전과 후의 사항⁷⁾이 차이가 있으나, 본회의 승인은 동일함에 따라 협회는 2021년, 2023년 규약 개정시 총회 의결후 본회의 승인을 득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규약」 개정 절차의 하자로 인정된다.

나. 협회 「규정」 제개정 절차 부적정

협회는 2019년부터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개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들을 협의 및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리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또한, 협회는 ‘경기도리그 운영위원회’ 운영을

7) 「규약」 변경 관련 절차

구 분	규약 변경 전	규약 변경 후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없 음.	필 요
이사회 의결	없 음.(발의시 의결 要)	필 요
총회 의결	필요(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필 요
본회의 승인	필 요	필 요

위한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경기도리그 운영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을 20**.**.**.*. 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협회 「규약」 제53조제2항은 「규약」외 협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시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필요시 협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리그 운영위원회 규정」의 경우 20**.**.**.*. 제정되었으며, 20**.**.**.*. 및 20**.**.**.*. 두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관련 규약에서 정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동 규정 제·개정시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제·개정되어야 하나, 그 의결 없이 「경기도리그 운영위원회 규정」이 임의적으로 제정 및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바, 절차상 하자로 판단된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은

현재 사무국에서 적용 및 시행하고 있는 협회 「규약」과 「경기도리그 운영위원회 규정」을 비롯한 각 규정을 점검하시어, 절차가 미준수된채 제·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 확인을 통해 제·개정하는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조치결과를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경기도체육회

주 의 조 치

[제 목] 임원 선임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20**.**.*. ‘2022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보고사항 5건과 심의안건 2건을 의결한 바 있다. 보고사항중 ‘2022년 임원현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현황에는 감사 2명을 포함한 회장(1), 부회장(6), 이사(15) 총 24명에 대한 현황과 향후 총회에서 선임 예정인 이사 3명이 기재되어 당일 이사회에 보고되었으며 회의록 확인 결과 별다른 이견없이 접수되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의 임원(부회장, 이사) 선임의 경우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회장이 추천한 사람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동조 제5항에 따라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발생시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정해진 임원의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한은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20**.**.**. ‘2022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감사 2명을 포함한 24명의 임원현황과 향후 선임예정인 이사 3명(정회☐, 문인☐, 조성☐)에 대하여 해당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별다른 이견없이 그대로 접수되었다.

선임예정인 3명 현황을 제외한 24명의 임원에 대하여 확인결과 2021년 현황 대비 이사 2명(김봉☐, 박동☐)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사 선임에 대한 절차 이행 검토 결과 총회 선임 등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대비 이사 2명의 증가는 결원이 발생하여 이사회에서 보선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볼 수 없으며, 신규 선임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협회는 동 2명에 대하여 「규약」 제22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며, 이는 임원 선임의 절차상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관계기관 의견]

협회는 20**.**.**. 진행된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사단법인 창립총회시 등 임원현황이 포함되었다고 하나, 사단법인 창립총회의 경우 회원이 협회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협회 규약상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라고 볼 수 없어 창립총회에서 선임되었다는 의견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은

現 이사회 구성 임원에 대하여 선임 절차준수여부를 확인하시어 협회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선임의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채 선임된 이사(정기감사중 확인된 박동☐ 이사의 경우 필히 재선임하여 주시고, 기타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발견시 재선임 조치요망 ※ 기 사직한 이사(김봉☐) 제외)에 대하여 재선임하는 등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비롯한 운영위원회, 학생야구지도자위원회, 독립야구경기도 리그위원회, 심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위 각종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 관련 규정으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심판위원회 규정」, 「독립야구단경기도리그운영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협회는 금번 정기감사 수감범위(‘21~‘23)내 각 위원회의 위원들의 교체 및 신규 선임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각 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 2022년 ‘학생야구지도자위원회’와 2023년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교체 사례가 확인되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각종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 설치시 「규약」 제37조부터 제39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며, 특히 협회는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제38조제4항에 따라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고 한다)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고, 그 외 각종위원회의 경우 제39조 제3항에 따라 본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회는 「규약」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위원회별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의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제38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외 위원회의 경우 각 위원회 규정⁸⁾에 따라 자격 있는자에 한하여 협회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⁹⁾은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경우 회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그 외 절차에 대한 명시된 규정은 없다 할 것이나,(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총회 선임 명시) ‘위원장’의 경우 ‘이사회에 승인 또는 동의’를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사회에 의결 절차는 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8) · 협회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위촉)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본 규정 제6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본 규정 제1장 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 본 협회 협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선출) 본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위원장은 본 협회 이사회에 승인을 득해야 한다.

· 협회 「심판위원회규정」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본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위원회 규정 미제정 운영

협회는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비롯한 운영위원회, 학생야구지도자위원회, 독립야구경기도리그운영위원회, 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규약」에서 정한바와 같이 운영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나, 그 여부의 확인결과 ‘스포츠공정위원회’, ‘심판위원회’, ‘독립야구단경기도리그운영위원회’의 경우 각 운영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적용중이나, ‘운영위원회’와 ‘학생야구지도자위원회’의 경우 규정 마련 없이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2개 위원회의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아무런 기준없이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정사항의 경우 그 효력에 대한 적법성 여부 또한 향후 문제 발생 요소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나.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협회는 각 위원회 위원 구성시 「규약」 제37조부터 제39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며, 「규약」 및 현재 제정된 각 위원회 규정(스포츠공정위원회, 심판위원회, 독립야구단경기도리그운영위원회)에 따라 각 자격 기준을 검토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협회 「규약」의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위원 구성 자격 및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협회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심판위원회 규정, 독립야구단경기도리그운영위원회 규정의

위원 자격기준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즉, 협회 회장이 위원을 위촉하되, ‘위원장’의 경우 이사회 승인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협회는 이사회에 ‘보고사항’이 아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 협회는 20**.**.**. 개최된 ‘2021 정기이사회’에 ‘학생야구 지도자위원회’의 위원장의 교체사항(김성☐→정희☐)을 ‘보고사항’으로 하여 이사회에 보고로 그치거나, 20**.**.**. ‘2023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교체사항(이재☐→마용☐)에 대하여도 보고사항으로 그치는 등 승인 또는 동의에 필요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은

가. 현재 관련 운영규정이 제정되지 않은채 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향후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선임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경 기 도 체 육 회 개 선 조 치

[제 목] 경영공시 미이행
[소 속 기 관]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협회 「규약」에 의거, 협회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 「규약」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제53조(규정 제·개정 등) 제56조(경영공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협회는 규약 및 제규정, 결산서,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외부평가, 감사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야구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었으나 예결산(안) 등 회원이 아니면 볼 수 없도록 회원전용으로 지정해두었고, 규정은 준비중으로 되어있어 확인할 수 없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협회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관련 문서를 공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하시기 바라며, 「규약」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들을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공직유관단체 미등록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미운영

[소 속 기 관]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이하 “종목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종목을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운동선수 등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법령과 제규정 등을 준수하여 협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등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제1항제3호에 의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표1]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를 받는 단체임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지정 및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로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표1]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결산현황(2021~2023년)

(단위:천원)

재 원 별	2023년 결산	2022년 결산	2021년 결산
국비	***,565	***,243	***,583
도비	*,***,470	*,***,167	***,257
도교육청	***,873	** ,000	** ,997
대한중목단체	** ,000	** ,000	** ,000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정기종합감사 수감자료 결산 현황 재구성

이에 따라 협회는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지정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기관에 맞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회계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실

[소 속 기 관]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고, 규약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재산 및 회계 관련 조항을 두어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항은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¹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부여와 그 위반하는 회계관계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10)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략”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4. “생략”

또한,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계규정」 제11조¹¹⁾는 ‘회계관계직원’ 등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지방회계법」 제50조 제1항과 동일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현재 회계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아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구분 및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회계재정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체육회 「회계규정」을 준용하는 등 협회 운영과 관련한 회계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에 따른 회계담당의 범위를 구분·지정하시고,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필히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체육회 「회계규정」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 등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